

의안번호	제 58 호
의 결 연 월 일	년 월 일 (제 회)

충청북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출 자	충 청 북 도 지 사
제출연월일	2014년 10월 2일

법무통계담당관 심사를 마칩

충청북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58
----------	----

제출연월일 : 2014년 10월 2일

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1. 제안사유

- 자치법규 제도 개선을 통해 기업·도민에게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사항에 대하여 일부 개정을 실시하고,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라 일부 개정 사항을 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명칭 변경 및 규제범위 조정(안 제5조, 제14조)
 - 고용센터소장→고용센터직원
 - 심사위원회 성별 균형 구성 추가
 - 고용심의회→노사민정협의회
 - 사업실적,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 참여내용→사업실적
- 예비사회적기업의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조항 삭제(안 제16조)

3. 의안전문 : 불 임

4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불 임

5. 관계법령 발체 : 불 임

6. 비용추계서 : 해당없음

충청북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2항 중 “고용센터소장”을 “고용센터직원”으로 하고, “10명이내로 구성한다”를 “10명 이내로 구성하되,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 위촉할 수 있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고용심의회”를 “노사민정협의회”로 한다.

제14조제1항 중 “사업실적,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 참여내용”을 “사업실적”으로 한다.

제16조를 삭제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조(사회적기업 심사위원회 구성과 운영) ① (생 략) ② 위원장은 업무담당국장으로 하고 심사위원은 지역내 학계, 경영계, 지방고용노동관서 <u>고용센터소장</u> 과 민간전문가 등 10명이내로 <u>구성한다</u> .	제5조(사회적기업 심사위원회 구성과 운영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--- <u>고용센터직원</u> ----- ----- <u>구성하되,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 위촉 할 수 있다</u> . ③ (현행과 같음) ④ ----- <u>노사민정 협의회</u> -----.
③ (생 략) ④ 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<u>고용심의 회</u> 에 보고하여야 한다.	
제14조(보고 등) ① 지정을 받은 예비사회적기업은 <u>사업실적,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 참여내용</u> 등 규칙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 2월말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②~③ (생 략)	제14조(보고 등) ① ----- ----- <u>사업실적</u> ----- ----- ----- -----. ②~③ (현행과 같음)
제16조(유사명칭의 사용금지) 예비사회적기업이 아닌 자는 예비사회적기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된다.	<삭 제>

관 계 법 령

□ 사회적기업 육성법

제17조(보고 등) ① 사회적기업은 사업 실적,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 참여 내용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 4월 말 및 10월 말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공표할 수 있다.

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을 지도·감독하며,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적기업 및 그 구성원에 대하여 업무에 필요한 보고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.

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보고서를 기초로 사회적기업의 운영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.

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보고 사항의 검토, 지도·감독 및 평가를 한 결과 필요하면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.

제19조(유사명칭의 사용금지) 사회적기업이 아닌 자는 사회적기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□ 여성발전기본법

제15조(정책결정과정 및 정치 참여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위원회를 구성할 때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. 다만, 해당분야 여성인재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여성정책실무회의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□ 충청북도 노사민정협의회 조례

제2조(노사민정협의회의 설치, 구성 및 기능) ① 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는 「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3조제1항에 따라 충청북도내의 근로자, 사용자 및 주민과 충청북도간 협력이 필요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노사민정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~④ 생략

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 다만, 「고용정책기본법」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역고용심의회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른 시·군·구 고용심의회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이미 심의한 경우 협의회는 해당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1.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
2. 지역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
3.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지역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□ 2014 (예비)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매뉴얼

chapter 07

04 사업참여기업 공모 및 선정

3. 사업참여기업 심사 및 선정

광역자치단체장은 사업개발비 사업참여기업의 심사 및 선정에 관한 전문적인 심의를 위하여 10인의 전문심사위원회를 둔다(관할 고용센터 직원 포함)